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9 선고 2021가단5326932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 고 1.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아리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5. 19.

판 결 선 고 2022. 6. 9.

주 문

1. 원고에게

가. 피고 B은 159,034,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2. 22.부터 2020. 3. 22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2021. 12. 21.까지는 연 6.07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,

나.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,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87,2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금원을,각 지급하고,

2.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12,8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3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피고 C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인도하라는 판결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나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원고에게, 피고 B은 구상금 159,034,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2. 22.부터 2020. 3. 22.까지는 연 6%의 약정지연손해금율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21. 12. 21.까지는 연 6.07%의 약정지연손해금율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,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87,2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며,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 B은, 임대차보증금 200,000,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, 이에 대하여 원고는,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질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 B은 근질권의 한도액인 187,200,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

행사할 수 없다고 다룬다.

민법 제352조에 의하면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므로 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채권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. 그러므로 질권설정자인 피고 B은 질권의 목적된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질권자인 원고가 동의하지 않는 187,200,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C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서 그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.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,800,000원(= 200,000,000 - 187,200,000)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만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, 피고 B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며,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.

판사 박지원

별지